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
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리지역 세분 및 농림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입안·결정 권한을 군수에게 일부 위임하여 비도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4만 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 (안 「별표 3」 제2호 바목)
-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1만 제곱미터 이하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안 「별표 3」 제2호 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바목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만 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법 제36조·제42조
---	-------------

별표 3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법 제139조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결정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계획은 제외한다) 가. ~ 마. <생략> 바. <u>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u> (1) <u>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된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과 법 제42조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관리지역의 세분결정(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에 한함)</u> <신설>	2.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하에 한함)</u> 사. <u>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에 한함)</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제84조(권한의 위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명시한 시장은 군수·구청장, 시보는 군·구보, 시홈페이지는 군·구 홈페이지, 시의회는 군·구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4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